

# 조선전기 초택(抄擇) 인사 운영과 『홍문록(弘文錄)』

---

신동훈  
가톨릭대학교 박사, 한국사 전공  
shoutting@naver.com

---

- I. 머리말
  - II. 초택(抄擇) 인선의 사례와 운영
  - III. 『홍문록』의 시행과 관행 형성
  - IV. 맺음말
-

## I. 머리말

---

『홍문록』은 홍문관 임용을 위해 선별된 인사 목록이다.<sup>1</sup> 『홍문록』은 홍문관 설립 시점부터 작성되어 폐지와 함께 중단되었다. 따라서 『홍문록』은 홍문관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성종 대 왕의 학술 자문기관으로 재탄생했고, 이후 양사(兩司)와 더불어 삼사(三司)로 불리며 청요직으로 인식되었다. 홍문관은 연산군 대 폐지되어 그 역할의 일부만 진독청(進讀廳)으로 유지되었지만, 반정(反正)과 함께 복설되면서 조선후기까지 핵심 관서로 운영되었다.

『홍문록』을 통해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고 그 가운데서 관원을 임용하는 홍문관의 인사 관행은 타 아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홍문록』은 홍문관의 인사 관행으로서 홍문관 연구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다루어졌기 때문에<sup>2</sup> 『홍문록』을 전론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했다. 『홍문록』의 작성 배경 및 과정과 운영에 관한 개괄적 양상이 최승희의 연구로 밝혀진 이후<sup>3</sup>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홍문록』을 활용한

---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조선시대 『홍문록(弘文錄)』과 집권세력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2-C14).

1 홍문록은 인사 명단으로서 그 성격적으로는 책보다는 문서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서 형태를 정리해 책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내용적으로도 명단이 아닌 인사 규정을 지칭할 때도 있다는 점, 본관록·이조록·도당록 등 각 단계별 명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동안 관행적으로 겹낫표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홍문록 및 이와 유사한 목록에 겹낫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단, 겹낫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홍문록을 책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홍문록의 단계별 작성 과정, 문서 형태, 장책 여부 등과 홍문관 인사 규정 등을 연동해 종합적·시계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이재호, 「弘文館 機能의 變遷」, 『釜山大文理大論文集』 제16권(1977).

구체적인 운영 양상이 남지대에 의해 밝혀졌을 뿐이었다.<sup>4</sup> 특히 조선전기 『홍문록』을 전론으로 다룬 연구는 최승희의 연구 이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홍문관의 언관화 및 16세기 낭관권 형성 과정을 살펴면서 『홍문록』 운영 양상의 줄거리를 그려낸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sup>5</sup> 이 연구는 『홍문록』 작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동년배 추천을 사관의 자천제(自薦制)와 더불어 낭관권 형성의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을 공문과 연결시키면서, 국왕·대신 등과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삼사·전랑 중심에 포진한 사림을 주목했다. 다만, 사림 세력의 성장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홍문록』을 다루다 보니, 관료제 운영이라는 제도사적 시각에서 변천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관료제 운영이라는 시각에서 당대 기록을 살펴보면 『홍문록』과 유사한 사례로서 『무재록』·『사유록』·『승문록』·『예문록』 등이 확인되며<sup>6</sup>, 『홍문록』을 차용한 「사복록(司僕錄)」 작성 논의 또한 확인된다.<sup>7</sup> 이 명단들은 해당 부서에 필요한 인사들을 미리 선별한 목록이다. 후술하겠지만, 『무재록』은 미래의 장수를 양성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젊은 무신을 가려 뽑은 명단이며, 『사유록』은 성균관 사유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명단이다. 특정 임무와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을

3 최승희, 「홍문록고」, 『大丘史學』 제15·16권 제1호(1978).

4 남지대, 「朝鮮後期の『黨爭』과 淸要職」,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5 최이돈, 『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研究』(과주: 일조각, 1992), 39~44쪽.

6 『예문록』은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분리·독립되기 이전 작성된 『홍문록』의 전신이었다. 최승희, 앞의 논문(1978).

7 이 가운데 『홍문록』의 전신인 『예문록』, 사례가 제한적인 『승문록』, 작성 논의만 있었던 「司僕錄」과 달리 『무재록』·『사유록』은 비교적 사례가 풍부한 편이다. 『무재록』은 세종 대부터 세조 대까지, 『사유록』은 세종부터 중종 대까지 그 기록이 확인된다.

미리 가려놓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명단들은 『홍문록』과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원 선발을 통한 인사 운용을 초택(抄擇) 인사라 명명하고자 한다. 초택 인사는 단어의 뜻 그대로 특정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뽑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명단 작성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초택을 통한 인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주로 행해졌지만, 『무재록』·『사유록』처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업무도 있었다. 그 가운데 『홍문록』은 홍문관원의 추천 및 선정, 이조의 인원 보충 및 선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정부 및 관련 당상관들의 추천 및 선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그리고 홍문관원의 신규 임용은 해당 명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홍문관 인사 운영은 국왕권을 통한 인사권의 사적 운영 억제 및 공적 운영 지향하고자 했던 조선의 관료제 상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초택 인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문록』을 통해 당대 인사 운영의 방편 중 초택 인사 운영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본고는 조선전기 초택 인선의 추이 속에서 『홍문록』의 성립 및 운영 관행 형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무재록』과 『사유록』을 중심으로 초택 인선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사 운영의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홍문록』 운영은 15세기부터 이어진 초택 인사 운영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것임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성종·중종 대의 『홍문록』 작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홍문록』 작성 및 운영의 제도적 변천을 추적할 것이다.

그동안 홍문관은 언관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홍문록』 또한 신진 관료들의 언관 진출 내지 낭관들의 정치세력화에 맞춰 파악되었다.<sup>8</sup> 본고는 제도사적 시각으로 인사 운용에 초점을 두고 조선전기

『홍문록』 운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전기는 『홍문록』 작성이 형성된 시점이자 운영 관행이 형성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운영 양상은 조선후기의 『홍문록』 운영을 둘러싼 역사상을 두텁게 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조선전기 정치제도사 연구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 II. 초택(抄擇) 인선의 사례와 운영

### 1. 『무재록(武才錄)』과 대비

『무재록』에 관한 기록은 1434년(세종 16) 12월, 세종이 이조에 내린 “『무재록』에 등재된 바는 가려 뽑은 지가 여러 해인지라, 임용에 방해됨이 있다. 지금부터는 3년에 한 번씩 나이 젊고, 젊고 기운이 팔팔하며 무략(武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의정부·육조판서·삼군도진무가 함께 의논하여 녹명(錄名)해서 아뢰도록 하라.”라는 전지(傳旨)에서 확인된다.<sup>9</sup> 이 기록을 통해 일회성 내지 간헐적으로 작성되던 『무재록』이 3년마다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장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선발 취지와 고위관료들이 해당 인물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작성했다는 선발 방식 또한 알 수 있다.

『무재록』은 1441년(세종 23) 2월 “대소무신을 대상으로 식년(武年)마다 의정부·육조판서·삼군도진무가 사람을 뽑아 기록한 것을 『무재록』이라 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후 꾸준히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1447년(세종

8 최승희, 앞의 논문(1978); 최이돈, 앞의 책(1992); 남지대, 앞의 논문(1992).

9 『世宗實錄』 16년(1434) 12월 2일.

29)에는 연변 고을의 긴요한 정도를 상·중·하로 분류하고 상긴(上緊) 고을에는 무과 출신자 혹은 『무재록』 등재자만 임명하도록 했다.<sup>11</sup> 이는 『무재록』 등재자의 위상이 무과 합격자에 버금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과 출신자의 수는 제한되었기에 그들만으로 긴요한 곳의 방비나 군사 행정 등을 충당하기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무재록』은—무과 출신자의 부족한 수를 채워줄 수 있는—현장 지휘관급의 장수를 양성하기 위해 젊은 무신들을 발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직무 경험을 쌓게 하려는 취지에서 3년마다 초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재록』은 구전군관(口傳軍官) 임명에 활용되었다. 구전군관은 변방의 장수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비장(裨將)이었다.<sup>12</sup> 구전군관은 변장(邊將)의 심복으로 인식될 정도로<sup>13</sup> 변장의 지근거리에서 변장을 호위하면서 장수로서의 임무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구전군관의 자격 요건은 ‘무재가 뛰어나 여러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변장의 추천인이 곧 구전군관으로 임명되어 문제로 지적되었다.<sup>14</sup>

의정부는 병조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전군관의 추천 대상을 『무재록』 등재자로 한정하고 『무재록』 선발 대상 확대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구전군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의정부는 매 식년마다 갑사·별시위·충의위·내금위·훈련관·성중애마 등의 관료들이 4품 현관(顯官)을 제외한 동·서반 5품 이하부터 무직자 가운데 무재와 문리를 갖추었거나 기사(騎射)·보사(步射) 중 하나라도 탁월한 자를 각각 3인씩을 천거하도록 했다.<sup>15</sup> 이렇게

10 『世宗實錄』 23년(1441) 2월 28일.

11 『世宗實錄』 29년(1447) 9월 4일.

12 오종록,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고양: 국학자료원, 2014).

13 『世宗實錄』 18년(1436) 윤6월 19일.

14 구전군관은 근무일을 仕日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연고·청탁 등 구전군관 임명을 둘러싼 폐단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5 『경국대전』의 동반계에 따르면 4품 이상은 大夫이며, 5품 이하는 郞이다. 미래를

추천된 사람들은 나이·본관·조부·외조의 직함을 정리해 병조에 올리고, 병조는 의정부·육조판서·진무와 같이 능력을 시험하고 신언(身言)을 보아 정밀하게 뽑았다. 그리고 최종 선발된 인원은 병적(兵籍)에 올려 병조·이조에 뒀다가, 삼군진무·겸사복·겸군기(兼軍器)·수륙장수(水陸將帥) 등에 결원이 있으면 빙고(憑考)하여 서용하자고 했다. 의정부와 병조는 기대효과로 나이 대에 맞는 무신들의 적재적소 임용을 들었고, 세종은 의정부의 의견을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sup>16</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갑사부터 성중애마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추천으로 최초 명단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 재직자들이 동료들의 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변장들의 친고·청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후술하듯이 친고·청탁을 통한 변장들의 구전군관 추천·임용 사례는 없어지지 않았다.

『무재록』의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무재록』보다 혈연 등 이른바 인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1441년(세종 23) 7월 병조는 “양계는 그 위급성으로 인하여 별시위·갑사로서 무재가 탁월하여 못사람이 복종하는 자를 가려서 부방(赴防)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양계 변장이 데리고 가는 군사는 모두 『무재록』에서 발탁하자고 했다.<sup>17</sup> 병조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야전 현장에서 친·인척 가운데 발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수장(守將)의 휘하들이 자제(子弟)나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적변(賊變)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

대비하기 위한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에 맞춰 5품 이하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당상관, 참상관이 일정한 계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大夫/郎의 계선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6 『世宗實錄』 23년(1441) 2월 28일.

17 『世宗實錄』 23년(1441) 7월 28일.

현장의 노골적인 제안에 병조는 행하고 있는 오래된 성법(成法)을 어길 수 없다면서 함길도도절제사의 제안을 일축했다.<sup>18</sup>

1443년(세종 25) 12월에는 “변장이 알아서 잘 천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소장수(大小將帥)의 구전군관 추천을 으레 승인해주는 문제로 인하여 『무재록』에 실린 자 및 두 번 도시(都試)에 1, 2등으로 합격한 자를 초록(抄錄)하여 치부(置簿)했다가 변장이 부임할 때 여기서 추천하도록 했다.<sup>19</sup> 친소에 의한 구전군관 추천·임명 문제가 계속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 구전군관 임용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재록』 작성은 문종 대에도 이어졌다. 문종 즉위년, 문종은 김종서의 상서(上書)에 따라 『무재록』 재작성을 지시하면서 성중관(成衆官)부터 별시위·갑사까지 보거(保擧)하도록 했다. 의정부는 전례대로 의정부·육조·삼군·도진무·중추원에서 논의하여 등재할 것을 제안했지만, 문종의 거듭된 주장을 따라 갑사와 별시위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는 김종서의 제안을 ‘전례’를 들어 반대하며 지휘관급에서 논의하자고 했다.<sup>20</sup> 이렇게 보았을 때, 1441년(세종 23) 논의된 『무재록』 등재 방식이 온전히 시행된 것 같지는 않은 듯 보인다. 이때 『무재록』 작성은 무재와 문리를 모두 갖춘 사람과 기사·보사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을 뽑도록 했다.<sup>21</sup> 동년배 추천과 『무재록』 등재 기준은 세종 대에 논의·시행되었던 방식이었다. 김종서의 제안은 결국 『무재록』 작성 방식을 세종 대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18 『世宗實錄』 24년(1442) 2월 27일.

19 『世宗實錄』 25년(1443) 12월 5일.

20 『文宗實錄』 즉위년(1450) 4월 22일. 세종 대에는 언급되지 않던 중추원이 추가되었는데, 평가자를 늘려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1 『文宗實錄』 즉위년(1450) 4월 30일. 의정부는 여기에 더하여 불충·불효한 자, 장죄를 범한 자, 영불서용인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세조 대 『무재록』 활용은 세종·문종 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463년(세조 9) 10월, 연산군(延山君) 김처의는 『무재록』에 등재되었으면서도 병서(兵書)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헌부에게 추핵당했다. 세조는 본인이 『무재록』으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김처의의 뜻을 모르겠다면서 의금부로 보내 직접 국문하겠다고 했다.<sup>22</sup> 이후 세조는 성균관 유생과 함께 『무재록』에 등재된 인물을 꺾 내부로 불러 각각 경서(經書)와 무경(武經) 등을 강(講)하도록 했다.<sup>23</sup> 또 『무재록』 등재자는 다른 무신에 비해 더 적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대로 퇴출되는 기준은 더 엄격히 적용했다.<sup>24</sup> 이는 『무재록』 등재자의 진급을 빠르게 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5</sup> 이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세조 대에 들어서면 『무재록』 등재자를 중심으로 독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신에게 독서를 강조했던 세조의 기호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sup>26</sup>

1465년(세조 11) 이후 『무재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홍문록』도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은 아니기에 『무재록』도 관례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승정원일기』나 문집 등에서도 확인되지

22 『世祖實錄』 9년(1463) 10월 22일.

23 『世祖實錄』 10년(1464) 8월 1일; 『世祖實錄』 11년(1465) 6월 8일.

24 『世祖實錄』 10년(1464) 9월 23일.

25 『무재록』의 승진·복직 등 인사의 준거 활용은 세종 대에도 확인된다. 이극점은 서천군사로 있을 당시 공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말을 구입한 것이 발각되어 파직되었는데, 이조는 『무재록』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지강령현사로 임명했고, 세종은 『무재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조는 죄가 없다면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世宗實錄』 25년(1443) 7월 17일. 이극점의 『무재록』 등재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는 贓罪로 파직당했어도 『무재록』을 근거로 재등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6 세조의 무신 선호 경향은 세조 대의 국방·군대·양병 등의 정책과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범주가 벗어나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않기에 『경국대전』 편찬과 함께 폐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무재록』은 세종 대부터 세조 대까지 활용된 것으로, 잠재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여 국방을 책임질 장수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무재록』 등재 조건은 무과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무재와 문리를 모두 갖춘 사람 및 기사·보사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었다. 또 국방이라는 특성상 피추천의 범주를 넓게 정하고, 때로는 승진·복직 등의 인사 준거로 활용되었지만, 장죄를 범한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반적인 관직 운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무재록』은 부족한 무과 합격자의 수를 보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 운용의 방편이었다고 판단된다.

## 2. 『사유록(師儒錄)』·『승문록(承文錄)』과 발탁

1435년(세종 17) 6월, 성균관 사유에 합당한 사람을 조사하여 명단을 작성했다.<sup>27</sup> 이 명단은 성균관원을 제외하고, 유생들을 잘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두었다가 학관에 궐원이 생기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다. 아마도 작성·운영되고 있었던 『무재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작성된 명단이 『사유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록』이라는 이름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약 4년이 지난 1439년(세종 21)경이다.

처음에 집현전·성균관으로 하여금 경명행수(經明行修)하여 사유에 합당한 자를 천거하라고 했는데 집현전에서 주부 김숙자를 천거했다. 이때에 이르러

---

27 『世宗實錄』 17년(1435) 6월 27일.

이조에서 숙자를 동부 교수관에 제수하니,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숙자는 등제(登第) 후에 조강지처를 버렸으니 심행(心行)이 바르지 못하여 행실을 닦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집현전에서 말을 맞춰 천거했으니, (집현전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한 율로써 처벌하고 아울러 이조 관리도 아울러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또 숙자를 『사유록』에서 삭제하십시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집현전과 이조의 죄를 용서하고 숙자를 『사유록』에서 삭제하라고 명했다.<sup>28</sup>

이 사료는 과거 시험 합격 후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것을 이유로 『사유록』에서 김숙자(金叔滋)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김숙자는 1419년(세종 1) 식년 문과에 급제했고, 1420년(세종 2) 재혼했다.<sup>29</sup> 정황으로 보았을 때 김숙자는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家格)이 높은 처가(妻家)를 얻기 위해 한번의 딸과 이혼하고 박씨와 재혼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0</sup>

28 『世宗實錄』 21년(1439) 4월 14일, “初 令集賢殿成均館薦經明行修可爲師儒者 集賢殿以注簿金叔滋薦之. 至是 吏曹除叔滋東部教授官 司憲府啓 叔滋登第後 棄糟糠之妻 心行不正 不可謂之行修 集賢殿同辭以薦 請以貢舉非其人律罪之 竝罪吏曹官吏 且削叔滋師儒錄” 上特宥集賢殿吏曹之罪 命削叔滋「師儒錄」.”

29 金宗直, 『佔畢齋集』文集附錄 「佔畢齋先生年譜」.

30 김숙자가 버린 조강지처는 韓變의 딸이었다. 사헌부는 조강지처 사이에 자식이 있는데도 庶孽이라는 이유로 이혼하려 했다고 하면서, 김숙자를 죄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와 가정을 이루게 해야 한다면서, 김숙자를 탄핵했다. 『世宗實錄』 5년(1423) 7월 4일. 『佔畢齋集』에는 김숙자의 出妻는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되어 있어 한번의 딸이 정말 서얼이었던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佔畢齋集』의 김숙자 연보에 따르면 한번 쪽과 관계된 사람들이 김숙자의 관력에 훼방을 놓는 장면이 더러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사헌부의 탄핵이 전혀 거짓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숙자가 한씨와 이혼한 후 새로 맞은 부인이 김종직의 생모인 朴氏였다. 『佔畢齋集』에 따르면 그녀는 사재감 正을 지낸 박홍신의 딸이었다. 박홍신은 고려 말 武官으로서 관력을 쌓은 사람이었는데, 대마도 정벌 당시 戰死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儒者와 결혼해야 한다는 집안 분위기의 영향으로 김숙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숙자의 재혼에 대해서는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성남: 신구문화사, 2009), 226~227쪽 참조.

이후 김숙자는 집현전의 추천으로 『사유록』에 등재되었고 이를 근거로 동부(학당) 교수관에 임명되었는데, 스승으로서 행실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것이었다.

『사유록』 등재 기준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문과출신자 가운데 경명행수자를 택했고, 김숙자의 경우처럼 경명행수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사유록』에서 삭제(削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스승 될 사람의 도덕성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사유록』 명단은 제조(諸曹)와 대간·집현전·예문관·춘추관·성균관에서 각각 추천하여 결정된 것이었고<sup>31</sup>, 수천(首薦)으로 『사유록』에 등재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sup>32</sup> 『사유록』 작성에는 학문적 능력을 살피고, 실제 임명 당시에 도덕적 소양을 검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유록』 등재자의 인사 범위는 ‘『사유록』을 작성해두었다가 관학(館學)에 결원이 있으면 품계에 따라 임명하고, 타 부서에 있더라도 또한 옮겨서 임명할 것,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무를 제외하고 교희(教誨)만 전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교관 임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3</sup> 또 『사유록』이 작성되었으니 불효죄를 범했던 이승문의 종학박사(宗學博士) 검직을 개차하자는 것으로 보아<sup>34</sup> 『사유록』에 등재되면 종학 교관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유록』의 기록은 성종 대에 확인된다. 1477년(성종 8) 11월 좌부승지 손비장은 현(現) 대사성 권윤, 겸사성 임수경·홍견손은 예전의 김구·김말

31 『世宗實錄』 21년(1439) 2월 2일. 작성 시점이 공교롭게도 식년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무재록』처럼 정기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2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先公紀年 第二」.

33 『成宗實錄』 1년(1470) 11월 8일.

34 『世宗實錄』 24년(1442) 2월 8일.

보다 못하니 재덕(才德)이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 사표로 삼자고 했고, 성종은 나이가 높아도 덕행이 없는 자가 있으니 사표에 합당한 자를 미리 택해놓으라고 했다.<sup>35</sup> 성종의 뜻은 『사유록』을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성종 대 『사유록』은 흥학(興學) 정책과 맞물려 『사유록』 등재자 혜택 부여 논의가 이루어졌다.<sup>36</sup>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인재를 성균관 사유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당시 논의된 혜택은 “『사유록』에 등재되면 수령을 거치지 않아도 4품 이상 승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혜택은 곧 ‘『사유록』에 등재되면 외관에 제수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면서 ‘『사유록』에 등재되었으나 아직 사유로 임명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신들은 원안 그대로 『사유록』 등재시 4품 이상으로 승진시키자는 찬성 의견, 실제 사유직에 임명된 사람만 4품 이상으로 승진시키자는 긍정적 절충안, 『사유록』에 임명되었으나 교수·훈도를 역임하면 된다는 부정적 절충안<sup>37</sup>, 외관을 거치지 않았으니 4품 이상 승진은 불가하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자 성종은 외관을 거치지 않아도 4품 이상으로 승진시키도록 하되, 『사유록』 인원을 확대하고 그 가운데 수령을 지낼 만한 사람이 있으면 수령으로 보내도록 했다. 성종의 결정은 『사유록』에 등재 후 학관으로 임명되어 구임하게 될 경우, 그들이 외관 역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4품 이상 승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때부터 『사유록』에 등재되면 외관으로 임명될 수는 있으나, 사유직 역임 여부와 상관없이 4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

35 『成宗實錄』 8년(1477) 11월 20일.

36 『成宗實錄』 21년(1490) 1월 24일.

37 당시 외교관직은 문과 출신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문과 출신자 가운데 나름의 검증을 거친 국학의 사유 후보자를 교수·훈도로 보내자는 것은 사실상 반대를 표한 것과 다름없었다.

또 1487년(성종 18)에는 『사유록』에 오른 인물들이 학관으로 부임했음에도 다른 관직으로 제수되기도 하는 등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없으니, 국학에서 구임(久任)할 수 있도록 홍문관의 예에 의해 천전(遷轉)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sup>38</sup>, 다음 해인 1488년(성종 19)에는 『사유록』에 등재되면 학관직에 임명하여 타관 겸직을 금하고 차례대로 승서(陞敘)하도록 했다.<sup>39</sup> 『사유록』 등재자의 혜택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유록』 등재와 사유직 임명을 더 밀착시켰다.<sup>40</sup>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의 조치들은 항식(恒式)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1490년(성종 21) 성종의 『사유록』 확대 전교로 인해 반우형 등 20명의 인원이 충원되었다.<sup>41</sup> 반우형은 사예로 임명되어 구임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함흥 군수 제수를 철회하고 자급을 추가하여 성균관에 재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2</sup> 또 『사유록』에 올라 성균관에서 20년 이상 후학을 가르친 이문홍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sup>43</sup>, 『사유록』 등재는 성균관의 구임관 임명과도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유록』 관련 기록은 1525년(중종 20) 기록에서 확인된다. 흥언필은 사습이 무너지는 이유로 ‘사유가 불명(不明)함’을 지적하며 『사유록』

38 『成宗實錄』 18년(1487) 2월 28일.

39 『成宗實錄』 19년(1489) 9월 9일.

40 이러한 조치는, 학생은 동일한 선생에게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선생은 타부서로의 遷轉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41 『成宗實錄』 21년(1490) 1월 24일; 『成宗實錄』 21년(1490) 2월 4일. 이때 뽑힌 인원은 반우형·표언말·김응기·최부·이문홍·안팽명·강경서·이달선·정성근·유송조·정석견·김심·김계행·장강·손번·권경우·이점·권빈·이창신·이유청 총 20명이었다. 이 중 김심·정석견·강경서·유송조는 승정원의 추천이었다. 『成宗實錄』 21년(1490) 9월 8일.

42 『成宗實錄』 22년(1491) 12월 16일.

43 『成宗實錄』 24년(1493) 10월 22일.

작성을 건의했고, 중종은 이조로 하여금 『사유록』을 작성하도록 했다.<sup>44</sup>

다음 해인 1526년(중종 21) 5월, 중종은 이조판서 허굉에게 『사유록』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허굉은 “지난번에 작성한 『사유록』에 인재가 많은데 모두 대간·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시키지 못했다.”라면서 『사유록』 작성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sup>45</sup> 이는 『사유록』 작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학문과 성품을 모두 겸비한 인재가 있다면 대간·시종에 우선 임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46</sup> 이상적인 교관은 문신 출신으로 남을 잘 가르치며, 성품도 훌륭하고, 학교 운영 및 행정 처리도 능숙하며, 수령 등 관리·감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이러한 인재라면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1525년에 작성된 『사유록』에 등재된 인물들 다수가 대간·시종에 우선 임명되었기에 『사유록』을 재작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종·중종 대의 사례로 보았을 때, 『사유록』은 장래성을 검증하여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가운데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무재록』과의 차이였다. 『사유록』은 현재 시점에서 성균관 유생들의 장기적·안정적 교화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한 것이었다.

한편, 1495년(연산군 1) 5월, 김일손은 십과(十科)의 인재 천거를 논하면서 『경국대전』의 천거 조항과 함께 ‘『홍문록』·『사유록』·『승문록』’을 언급했다.<sup>47</sup> 주지하듯 『홍문록』은 『예문록』부터 이어져 계속 사용되었고, 『사유록』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종 대까지 기록이 확인된다. 그런데 『승문록』에 대한 기록은 김일손의 언급을 제외하면 『성종실록』의 2건이 확인될 뿐이다.

44 『中宗實錄』 20년(1525) 4월 19일.

45 『中宗實錄』 21년(1526) 5월 12일.

46 이는 향교 교관 확보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47 『燕山君日記』 1년(1495) 5월 28일.

따라서 여기서 『승문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승문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1486년(성종 17) 2월, 대사간 한언이 승문원 제조 윤필상을 탄핵하는 대목이다. 이극규가 황해도·전라도 도사로 임명될 당시에는 승문원 제조의 이견이 없었는데, 영안도 도사에 제수되자 제조 윤필상이 『승문록』 등재를 근거로 개정을 요청했고, 그러자 사간원은 승문원 제조의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었다. 사간원의 탄핵에 대해 윤필상은 『승문록』에 60명이나 등재되어 있어 사간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19명을 간택했는데, 이극규는 해자(楷字)에 능숙해 포함되었기에 체직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sup>48</sup>

윤필상의 발언으로 보아 『승문록』에 등재되면 제조의 요청 등을 통해 외방직 제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전』의 외방직을 거치지 않고도 4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즉 “승문원 관원사자이문특이자(承文院官員寫字吏文特異者)”가 주목된다.<sup>49</sup> 이극규가 해서체에 능숙해 『승문록』에 포함되었다는 윤필상의 발언으로 보았을 때, 『승문록』은 “승문원관원사자이문특이자(承文院官員寫字吏文特異者)”를 발탁해 성적(成籍)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보다 앞서 확인되는 『조천록(朝天錄)』도 『승문록』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478년(성종 9) 10월, 허침이 유양춘의 승문원 교리 제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윤필상과 이승소는 유양춘은 『조천록』에 뽑혔으니 만약 이문(吏文)·한훈(漢訓)에 능통하다면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성종은 유양춘의 이문 능력을 검증하라고 명했다.<sup>50</sup> ‘조천(朝天)’이라는 이름과 이문·한어 능통 여부 등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

48 『成宗實錄』 17년(1486) 2월 2일.

49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50 『成宗實錄』 9년(1478) 10월 7일.

『조천록』은 명(明)과의 외교 관련 업무 담당자 명단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조천록』은 『승문록』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sup>51</sup>

그리고 『승문록』에 대한 기록은 『오천집(梧川集)』의 이종성(李宗城, 1692~1759) 연보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이종성은 36세가 되던 1727년(영조 3) 12월 『홍문록』과 『승문록』에 뽑혔고, 다음 해 1월 『도당록(都堂錄)』에 뽑혀 홍문관 정자(正字)에 임명되었다.<sup>52</sup> 이 기록으로 보아 『승문록』에 대한 언급이 적을 뿐,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무재록』·『사유록』·『승문록』 사례 검토를 통해 조선전기 초택 인사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무재록』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관료를 발탁했다. 『사유록』은 지금 당장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았다. 『무재록』은 젊은 관료를 발탁해 현장 경험 등을 쌓도록 했지만, 『사유록』은 성균관 구임을 염두에 두고 뽑은 것이었다. 또, 『무재록』은 식년마다 정기적으로 작성했지만, 『사유록』은 간헐적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과정도 동년배 추천을 포함한 폭넓은 추천자와 무직자도 피추천 대상이었던 『무재록』과 달리 『사유록』은 이·예조 및 당상들의 추천·검증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1490년(성종 21) 『사유록』 작성 당시에도, 이극배의 의견에 따라 의정부·육조·관각당상(館閣堂上)·성균관·홍문관의 유신(儒臣)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채택 과정을 거친 이유는 『사유록』 작성이 간헐적이라는 점과 집현전 폐지 및 홍문관 복설 과정에서 그 업무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53</sup>

51 아래 이종성의 『홍문록』·『승문록』 중복 등재처럼 유양춘도 『예문록』과 『조천록』에 모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52 李宗城, 『梧川集』 卷1 「年譜」.

53 해당 아문의 관원 자천은 왕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었다. 이조·예조로의 업무 이관은 이러한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홍문록』 작성에도 나타날

『무재록』과 『사유록』에 관한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그 운영 양상은 홍문관원을 뽑기 위한 『홍문록』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홍문록』 등재는 청요직에 입문한 것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사유록』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 『무재록』은 중단되었지만 『사유록』은 『홍문록』과 함께 적어도 조선전기까지 작성되었다는 점 등의 차이를 확인했다. 또, 『승문록』은 그 기록이 소략해 운영 양상을 알 수 없지만 『경국대전』의 외관을 거치지 않아도 4품 이상 승진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연결되며, 지금 당장의 능력을 요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성격의 『홍문록』과 상당히 유사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Ⅲ. 『홍문록』의 시행과 관행 형성

#### 1. 『예문록(藝文錄)』에서 『홍문록』으로

주지하듯 세조가 폐지했던 집현전은 성종 대에 홍문관으로 계승되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에 구 집현전 인원 15명을 추가·복설했고, 1478년(성종 9) 3월 홍문관으로 분관되었다. 이는 홍문관으로 분관되기까지 예문관에 홍문관의 업무가 중첩되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예문록』은 이 사이에 작성된 『홍문록』의 전신(前身)이었다.<sup>54</sup>

『예문록』은 1471년(성종 2) 4월, 증경정승(曾經政丞) 및 의정부·육조·관각(館閣)의 당상관이 논의하여 김혼 등 15명의 『예문록』을 작성했다는 기록을 통해 처음 확인된다.<sup>55</sup> 주목되는 것은 사신(史臣)의 덧붙임이다. 사신은

---

수 있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54 최승희, 앞의 논문(1978).

유양춘에 대한 이조판서 이극증과 검판서 노사신의 반대가 있었지만, “뽑더라도 이조에서 서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중론으로 유양춘이 뽑혔음을 지적했다. 『예문록』 작성 초창기부터 청탁 등 부정에 의한 등재가 있었던 것이다. 유양춘의 『예문록』 등재는 예문관 부제학 김지경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sup>56</sup>, 거듭된 요청에 의해 유양춘은 『예문록』에서 삭제되었다.<sup>57</sup>

1472년(성종 3) 9월 의정부·제관당상(諸館堂上)·육조참판 등이 『예문록』 등재자 30명을 뽑았다.<sup>58</sup> 1년 5개월여 만에 30명의 인원을 새로 뽑았기에, 예문관 부제학 유권 등에 의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권 등은 30명이 뽑힌 것은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문록』을 작성하지 말고 궐원인 수찬(修撰)에는 한 사람만을 가려 임용하자고 했다. 그러나 성종은 충분히 뽑아놓고 궐원이 발생하면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유권 등의 의견을 일축했다.

『예문록』 개정 요구는 경연에서도 이어졌다.<sup>59</sup> 부제학 유권과 사헌부 집의 임사홍 등은 『예문록』 등재자가 70여 명에 이른 것은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성종은 “그들의 정밀함을 너는 어찌 다 아느

55 『成宗實錄』 2년(1471) 4월 18일. 예문록 작성 초기에는 예문관원의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때의 『홍문록』 선발은 집현전 선발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집현전 방식을 따르던 『홍문록』 선발에 제배 추천이 들어간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선행 연구에선 낭관권 형성을 제배 추천 시행의 배경으로 보았다. 최이돈, 앞의 논문(1992).

56 『成宗實錄』 2년(1471) 4월 23일. 유양춘은 그의 외삼촌 현득리와 함께 문과 회시에 부시했다가 그와 답안지를 바꿔 제출했는데, 현득리는 합격하고 자신은 낙방하자 이러한 정상을 고발했고, 결국 이로 인해 영구정거당했다. 이후 유양춘은 세조의 특은으로 과거에 응시해 합격했다.

57 『成宗實錄』 2년(1471) 4월 25일.

58 『成宗實錄』 3년(1472) 9월 24일.

59 『成宗實錄』 3년(1472) 9월 26일; 『成宗實錄』 3년(1472) 9월 27일.

냐.”고 힐문하면서 인물의 정밀함은 실제 임용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문록』 개정 요구는 계속되었고, 헌납 최한정·김제신은 스스로 능력이 없음에도 『예문록』에 등재되었다면서 피함을 청했다.<sup>60</sup>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지자 신숙주가 중재에 나섰다. 신숙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회의 참석자들이 가부를 표하는 방식은 참석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의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보자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 아래에 권점을 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3점 이상은 모두 수록했다가 결원이 있으면 이조가 그 인품을 헤아려 채용하자고 했다. 또 뽑힌 사람은 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뽑힌 숫자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경연관의 인사(人事) 관여를 지적하면서 유권은 당시 회의에 참여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발언하지 않고 이제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덧붙였다.<sup>61</sup> 신숙주는 공개 투표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찬반을 명확히 표할 수 있는 비밀 투표 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후 『홍문록』 등재는 권점 획득 우선순위로 확인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1486년(성종 17) 사복시 구임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성종은 마정(馬政)에 능한 자를 가려 『홍문록』의 예를 따라 치부(置簿)해 뒀다가 때를 당하여 임용하자는 안건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신들의 증론은 치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홍응은 홍문관은 논사(論思)·고문(顧問)을 담당하기에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복록』을 둔다면 다른 관사(官司)에서도 원용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sup>62</sup> 홍응의 인식은 홍문관의 위상과 더불어

60 『成宗實錄』 3년(1472) 9월 28일; 『成宗實錄』 3년(1472) 9월 29일.

61 『成宗實錄』 3년(1472) 9월 28일.

62 『成宗實錄』 17년(1486) 3월 24일.

홍문관 임용후보자인 『홍문록』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1487년(성종 18) 10월, 안호는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다. 안호는 『홍문록』에 뽑히지 못했었는데, 홍문관원이 된 동생 안침을 통해 홍문관원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안침의 추천으로 『홍문록』에 뽑혔다.<sup>63</sup> 안호의 사례는 『홍문록』은 작성 과정에 홍문관원의 추천 단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홍문관원들과 교류하게 된 연후에 동생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홍문록』 등재에 사적 관계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1493년(성종 24) 10월 유승조의 『시강원록』 작성 제안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된다. 유승조는 『홍문록』·『사유록』의 예를 따라 시강원에도 록(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동지사 유순은 별도의 록(錄) 대신 『홍문록』 등재자를 서연관에 임용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극돈은 “『홍문록』은 연소총민자(年少聰敏者)만 가리기 때문에 전조의 의망, 의정부의 검토, 대간의 탄핵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강관 권주는 “『홍문록』은 연소(年少)만 취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인성은 동년배가 모두 알기 때문에 시강에 합당하다.”면서 유순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성종은 서연관은 인성이 중요하고 공론이 있기에 별도의 록(錄)은 필요하지 않다면 서 예전처럼 전조에서 의망하고 대간이 논박하도록 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홍문록』에 대한 이극돈과 권주의 상반된 인식이다. 이극돈은 『홍문록』에 대해 인성은 검증할 수 없다는 시각인 반면, 권주는 동년배가 뽑기에 당연히 인성 또한 검증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극돈은 전조의 의망, 의정부의 검토, 대간의 탄핵 등을 강조했는데, 『홍문록』 또한 홍문관원 추천, 이조의 검토, 의정부의 최종검토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홍문록』 작성에 상대적으로 홍문관원의 추천

63 『成宗實錄』 18년(1489) 10월 26일, “國法 擇文臣有才行者 名爲弘文錄, 不與選者 不得授弘文職 例也”.

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욱이 이극돈의 말에 따르면 홍문관은 전조의 주의나 대간의 논박에서 비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당시 홍문관의 급격한 위상 상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된다.<sup>64</sup>

한편 사신(史臣)은 안호의 홍문관 임용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법(國法)에 문신 중에서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을 『홍문록』이라 하는데, 뽑히지 못한 사람은 홍문관직을 얻지 못함이 예(例)이다.”라고 했다. 사신의 인식에서 ‘『홍문록』 등재 후 홍문관 임용’뿐 아니라 그 반대인 ‘홍문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홍문록』 등재’가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왕의 인사권과 『홍문록』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국왕의 인사권과 『홍문록』의 충돌은 1489년(성종 20) 4월 김전의 홍문관 부수찬 임용 사례에서 확인된다. 사간원은 『홍문록』 미등재자 김전(金詮)의 부수찬 임명을 지적하면서 김전의 숙부 이조참의 김제신이 인협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해 김전에게 고귀한 벼슬(華秩)을 제수했다고 계문했고, 이에 대해 성종은 이조판서의 손을 들어주며 사간원을 힐난했다.<sup>65</sup> 다음 날 대간은 김전의 부수찬 제수를 다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종은 김전은 문과(성종 20년 식년시)에서 장원을 했기 때문에 홍문관에 제수할 충분한 능력을

---

64 이와 관련하여 영광 군수 奇攢의 사례가 주목된다. 영광 군수 奇攢은 홍문관 응교를 역임했었는데, 군수가 되자 홍문관 출신임을 자랑했다. 그런데 영광 사람들은 官制에 익숙하지 못해 서로 “홍문관이 대체 무슨 물건인가?”라고 물었다. 『成宗實錄』 24년(1493) 12월 24일, “弘文館是何物歟”. 주지하듯 홍문관은 1478년(성종 9) 예문관에서 분리되면서 비로소 성립되었고, 1479년(성종 10)대에 언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최승희, 『朝鮮初期 言論史研究』(과주: 지식산업사, 2004), 246, 278 쪽. 이렇게 본다면 기찬의 사례는 약 14~15년 정도 된 홍문관의 위상이 지방까지 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즉 당시 홍문관은 정치 무대에서 핵심 기구로 급부상했지만 지방에서는 ‘홍문관’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도성과 지방의 간극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단편적인 편린에 불과하지만 당시 도성에서의 홍문관 위상이 적어도 전라도 영광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 『成宗實錄』 20년(1489) 4월 12일.

갖췄다고 하면서, 김제신이 사정을 썼을 리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대간은 성균관 전적(典籍)에 2원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찬을 제수한 것은 사정이 개입된 것이라고 답했고, 성종은 다시 그랬을 리 없다고 답했다.<sup>66</sup>

대간은 정6품의 다른 관직을 제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록』 미등재자인 김전을 수찬에 임명한 것은 김제신의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에 비해 성종은 식년 문과 장원이기 때문에 능력은 검증되었으며, 이조에서 사정을 썼을 리 없다는 것이었다. 성종은 대간의 반대를 강하게 물리치며 김전의 홍문관 임명을 고수했는데, 왕으로서는 초택이 자신의 인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례는 식년 문과 장원도 『홍문록』에 등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홍문록』 등재자 중 홍문관원 임명이 예(例)라고 하지만 왕이 강행하면 『홍문록』 미등재자도 홍문관원에 임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홍문관에 임용되기 위해선 『홍문록』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관례는 점차 굳어졌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보직을 비워두게 되었다.<sup>67</sup> 그에 반해 홍문관의 차례대로 천전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너무 빠르게 승진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sup>68</sup> 이러한 문제는 홍문관원들이 대간 등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를 차례대로 천전해 채웠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홍문관 남행(南行)인 정자·저자·박사가 꺾원이 되는 빈도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절을 바꿔 살펴보도록 하겠다.

---

66 『成宗實錄』 20년(1489) 4월 13일.

67 『燕山君日記』 3년(1497) 1월 23일.

68 『燕山君日記』 5년(1495) 5월 21일.

## 2. 반정(反正) 이후 『홍문록』의 활용 추이

중종 재위 초반은 연산군 대의 폐정(弊政)을 바로잡는 시간이었고, 그 원칙은 ‘성종 대로 되돌린다’는 것이었다.<sup>69</sup> 연산군 대의 흔적은 중종 재위 초반 『홍문록』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1508년(중종 3) 대간은 갑자년 이후 작성된 『홍문록』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노종 등 14명의 개정을 요청했지만,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sup>70</sup> 중종은 대신들에게 『홍문록』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대신들도 “대간이 동년배의 일을 논박할 때는 반드시 자세히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간의 의견에 따를 것을 권했고, 중종은 홍문관의 의견을 묻도록 했다.<sup>71</sup> 홍문관은 거론된 14인 중 윤탁을 제외한 모두가 홍문관에서 추천한

69 본고에서 反正은 ‘중종반정’을 가리킨다. 학계 용어로서 ‘중종반정’을 사용해야 ‘인조반정’과의 혼선을 피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유에서 사료 용어인 ‘반정’을 사용했다. 하나는 인조반정과 구별하기 위해 중종을 사용했지만, 중종을 덧붙임으로 인하여 반정의 성격이 왕위 교체 위주의 정치적 사건으로만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당시의 반정은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그 배경과 완성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민의 지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두 번째 이유는, 반정을 왕위 교체 위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반정이 거사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사 이후 중종과 반정공신들은 연산군 대 시행된 사실상 모든 것을 없애거나 성종 대로 되돌렸다. 이러한 정책들을 반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의 반정 지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다시 말해 반정의 명분을 사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의 정치적 사건으로 비취 질 수 있는 ‘중종반정’보다는, 긴 호흡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당대 용어 ‘반정’을 사용하고자 한다. 반정의 시간은 민심의 이반부터 민심의 획득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70 『中宗實錄』 3년(1508) 3월 29일. 이와 유사한 사례는 1511년(중종 6) 예조 정랑 유여림의 『홍문록』 등재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대간은 연산군이 사운을 배풀어 유여림이 급제했다는 것을 이유로 『홍문록』 개정을 요청했지만, 중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中宗實錄』 6년(1511) 4월 16일; 『中宗實錄』 6년(1511) 4월 21일; 『中宗實錄』 6년(1511) 4월 23일.

71 『中宗實錄』 3년(1508) 3월 29일.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조를 거치고 정승과 관각당상의 의논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sup>72</sup> 여기서 당시 작성되고 있던 『홍문록』의 작성 단계, 즉 홍문관에서 추천하고 이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승과 관각당상이 모여 결정했다는 것과 각 단계를 거치면서 후보군이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된다.<sup>73</sup> 같은 날 거듭된 대간의 요청에 따라 중종은 『홍문록』 개정을 허락했다.<sup>74</sup>

그런데 다음 날, 성희안이 『홍문록』 삭제를 거론하며, 폐조 때의 일로 사람들을 탓할 수 없으며 당시 과목이었던 시(詩)로써 등재한 것 또한 책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중종은 승정원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결정을 반복했다.<sup>75</sup> 대간이 『홍문록』 개정을 요구하고<sup>76</sup>, 박원종까지 대간의 요구에 따를 것을 권했지만 중종은 『홍문록』을 개정 철회를 반복하지 않았다.<sup>77</sup> 성희안은 이 문제를 『홍문록』 등재 인물의 개별적인 것에서 연산군 대의 청산 범위 문제로 전환시켰고, 연산군 대 활동했던 인물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중종은 성희안의 의견을 근거 삼아 『홍문록』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510년(중종 5) 『홍문록』 성적(成籍)에서는 대간이 “홍문관의 추천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육조 낭관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등재되었다.”면서 재작성을 건의했다. 대간은 홍문관 최초 추천 명단이 이조와 의정부를 거치면서 상당수 바뀐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72 『中宗實錄』 3년(1508) 3월 30일.

73 이러한 행정 체계는 다음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中宗實錄』 5년(1510) 11월 21일, “弘文錄 國家重選 卽古之集賢殿也. 其選之也 本館磨鍊抄擇 移于吏曹 吏曹磨勛報政府 政府磨勛 始許入選 不其重乎”.

74 『中宗實錄』 3년(1508) 3월 30일.

75 『中宗實錄』 3년(1508) 4월 1일.

76 『中宗實錄』 3년(1508) 4월 1일.

77 『中宗實錄』 3년(1508) 4월 3일.

이에 대해 성희안은 이조가 살펴서 임용하면 된다고 답했고, 대간은 『홍문록』을 작성했음에도 이조의 주의(注擬)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sup>78</sup> 다음 날, 유순정은 신급제 방(榜)이 나오면 『홍문록』을 작성하는 것이 상례이며, 홍문관에 궐원이 많아 부득이하게 많은 인원을 뽑았다고 하면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sup>79</sup>

이러한 사례는 이조와 의정부 및 관각당상을 거치면서 다수의 인물들이 추가·간택되어 홍문관원의 추천 단계와 전혀 다른 『홍문록』이 작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홍문록』 등재 숫자는 홍문관 궐원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이조의 주의가 중요하다든 입장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홍문록』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곧 홍문관 제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대간의 발언처럼 “『홍문록』 등재가 곧 홍문관 제수를 의미하기에 이조의 주의는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될수록 왕의 인사권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왕의 인사권의 『홍문록』의 충돌은 1513년(중종 8) 『홍문록』 작성 과정에서 재확인된다. 대간이 선록(選錄)의 용잡(冗雜)을 근거로 『홍문록』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중종은 “인사는 전조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홍문록』을 작성해야 하는가.”라고 『홍문록』의 필요성을 대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이 “이조에 전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홍문관 인사는 이조에서 담당하라고 했다.<sup>80</sup> 며칠 뒤 지평 김희수가 조종의 법을 바꿀 수 없다고 간하면서 『홍문록』 작성 논의로 이어졌다. 영경연사 송일은 성종 대는

78 『中宗實錄』 5년(1510) 11월 22일.

79 『中宗實錄』 5년(1510) 11월 23일. 중종 초반 『홍문록』 작성과 관련된 문제는 연산군 대 급제·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으며, 연산군 대의 시간과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개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홍문록』 선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80 『中宗實錄』 8년(1513) 4월 11일.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선록했고 그 사람이 부당하면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난번 등재된 10명(본관 6명, 이조 1명, 의정부 3명) 모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시강관 김내문과 동지사 박열은 여러 단계를 거쳐도 부족함이 있는데, 하물며 이조가 독선한다면 더 부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선록하자고 했다. 이날의 논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대간에 묻은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대간은 폐조(廢朝)에서 예무관(預務官)이었다는 이유로 연구령을, 학문이 없다는 이유로 경숙·남세준을, 한미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최산두를 지목했다.<sup>81</sup>

며칠 뒤 성희안은 전조에서 주의하기로 했으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송일은 조종의 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신들의 중론 또한 조종의 양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종은 대신들의 중론을 따라 예전처럼 『홍문록』을 작성하도록 했다.<sup>82</sup> 중종과 성희안의 의견은 줄곧 전조가 주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문록』은 조종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홍문록』에 등재되어야 홍문관에 임용될 수 있다는 관례(慣例) 또한 굳건해졌다.

이러한 관례를 더욱 강고히 한 것은 이른바 기묘년간 부터였다. 김정은 “『홍문록』은 동료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이조·의정부에서 가감할 수 없다.”고 했고<sup>83</sup>, 조광조도 이조 및 의정부 관원들의 사정을 거론하며 『홍문록』은 홍문관원의 추천으로만 작성할 것을 피력했다.<sup>84</sup>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홍문록』 작성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던 중종의 태도 변화였다.

1519년(중종 14) 『홍문록』 성적이 끝나자 조광조는 “이조와 의정부

81 『中宗實錄』 8년(1513) 4월 13일.

82 『中宗實錄』 8년(1513) 4월 23일.

83 『中宗實錄』 13년(1518) 2월 24일.

84 『中宗實錄』 14년(1519) 4월 19일.

거치면서 『홍문록』에 15명이 등재되었는데, 이는 홍문관에서 올린 23명과 상이하다.”고 했고, 중종은 의정부로 하여금 『홍문록』을 개정하라고 명했다.<sup>85</sup> 다음 날 안당은 점수로 뽑는 『홍문록』의 선발 방식은 중조(中朝)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언의(言議)만으로 뽑는다면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홍문록』 개정에 반대했다. 중종은 안당에게 대신들은 재상의 자제만 알 뿐 초야의 선비들은 모르지 않냐고 반문했지만, 안당은 그것은 공론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점수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sup>86</sup> 같은 날 중종은 김구에게 『홍문록』은 공론을 따라 취하는 것이 옳으며 점수로 결정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sup>87</sup> 홍문관원의 추천을 신뢰하는 중종의 태도는 분명 그 전과 달라진 것이었다.

한편 식년마다 작성되던 『홍문록』은 과거 시험의 영향을 받았다. 과거 시험에 문제가 있어 파방될 경우 자격 요건 취소로 『홍문록』 등재가 취소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묘사화 이후 현량과로 뽑힌 사람들의 『홍문록』 등재 개정이었다. 당시 식년시와 현량과가 끝난 후 이를 바탕으로 『홍문록』을 뽑았었는데<sup>88</sup>, 현량과 파방 논의가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문록』 개정 논의까지 이어졌다.<sup>89</sup> 현량과 파방 찬성은 출제자(기묘사림)와 응시자의 친분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파방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측은 모든 것이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파방했을 시 뒤따라올 『홍문록』 개정 등의 후속조치들을 거론했다. 주지하듯 현량과는 파방되었기에 『홍문록』 또한 개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홍문록』 등재 인원이 줄어들면서 홍문관원 부족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sup>90</sup> 남곤은 이를

85 『中宗實錄』 14년(1519) 4월 24일.

86 『中宗實錄』 14년(1519) 4월 25일.

87 『中宗實錄』 14년(1519) 4월 25일.

88 『中宗實錄』 14년(1519) 4월 17일.

89 『中宗實錄』 14년(1519) 12월 25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봄·가을마다 의정부에서 과시(課試)하여 우등한 사람들을 『홍문록』에 올리자고 했고<sup>91</sup>, 『홍문록』 등재 관원들도 월과 제술을 시행했다는 것으로 보아<sup>92</sup> 남곤의 제안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sup>93</sup>

한편 『홍문록』 선록은 그 등재 인물의 적절함과 관련하여 거듭된 논란을 빚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의 자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정, 즉 인적 관계가 선록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511년(중종 6) 공조 좌랑 강태수의 『홍문록』 등재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었다. 강태수는 장리 강학손의 아들이었지만 숙부 강귀손의 후사가 되어 과거에 응시·합격했다. 이조에서 『홍문록』을 초(抄)할 때 명사(名士)들과 친했던 강태수를 『홍문록』에 올렸고, 정랑 최명창이 “장리(臧吏)의 친자를 경연관에 임명할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강태수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생부의 죄로 『홍문록』에 등재되지 못했다.<sup>94</sup> 1515년(중종 10) 대간은 최산두의 『홍문록』 등재를 지적했는데, 당시 사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최산두의 흠결은 한미한 집안이라고 하면서 대간을 비판했다.<sup>95</sup>

90 이는 사화 등의 정치적 격변이 관료제 운영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즉 문신들이 대거 파직·파출되면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한 인력 공백이 人事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91 『中宗實錄』 15년(1520) 2월 22일.

92 『中宗實錄』 25년(1530) 3월 27일.

93 이와 유사한 사례로 명종 때에는 『홍문록』 등재자 및 製述로 뽑힌(被抄) 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매 계절 仲月마다 시행되었다. 정사룡의 건의로 1553년(명종 8)부터 시행된 이 시험은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명종 말년까지 계속되었지만, 당대에서조차 그 효과를 의심받았다. 『明宗實錄』 12년(1557) 11월 17일; 『明宗實錄』 14년(1559) 2월 8일; 『明宗實錄』 18년(1563) 12월 2일; 『明宗實錄』 21년(1566) 5월 18일. 시험 시행 기사는 1554년(명종 9)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기록이 꾸준히 확인되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출처는 생략한다.

94 『中宗實錄』 6년(1511) 5월 25일.

95 『中宗實錄』 10년(1515) 5월 17일; 『中宗實錄』 10년(1515) 10월 6일.

1533년(중종 28)에는 김안로의 아들인 김기의 홍문관 정자 제수가 논란이 되었다.<sup>96</sup> 중종은 상피로 인하여 이조 판서 김안로가 김기를 정자에 제수할 수 없는데 홍문관 남행(南行)에 적합한 사람도 없다면 방안을 물었고, 영의정 장순손은 성종 대 김전의 사례를 들어 왕이 임명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sup>97</sup> 얼마 뒤 대간은 단망(單望) 사례가 없었다면서 김기의 정자 임용을 비판하자, 중종은 윤원형을 올릴 수 있었지만 중전의 지친이라 올리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sup>98</sup> 이로써 보면 홍문관의 경우 단망은 관례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35년(중종 30)에는 조계상의 아들 조광원의 『홍문록』 등재가 논란이 되었다. 조계상은 김안로와의 불화로 인해 귀양 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홍문록』에 올라 논란이 된 것이었다. 중종은 조광원에 권점을 부여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고<sup>99</sup>, 다음 날 우의정 윤은보는 이미 권점이 부여되어 있었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권점을 부여했다고 해명했다.<sup>100</sup> 다시 그 다음 날 우찬성 유보는 나익에 대한 물의를 들었다면서 대죄했는데, 중종은 나익은 조광원과 다르다면 대죄하지 말라고 답했다.<sup>101</sup> 이 사례는 의정부 당상들의 관계적 권점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권점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홍문록』 등재와 관련한 인적 관계의 작동은 명종 대 이량의 예에서

96 홍문관 正字는 博士·著作와 함께 홍문관 南行으로 불리는 관직이다. 이보다 후대이지만 『明宗實錄』에서 『홍문록』은 홍문관 南行 임명과 관련하여 확인된다. 『明宗實錄』 즉위년(1545) 11월 26일; 『明宗實錄』 1년(1546) 4월 28일.

97 『中宗實錄』 28년(1533) 7월 15일.

98 『中宗實錄』 28년(1533) 7월 29일.

99 『中宗實錄』 30년(1535) 6월 25일.

100 『中宗實錄』 30년(1535) 6월 26일; 『中宗實錄』 30년(1535) 11월 20일.

101 『中宗實錄』 30년(1535) 6월 27일. 『홍문록』 선정 중 권점 실수로 파직당한 사례도 있었다. 『中宗實錄』 32년(1537) 11월 26일.

잘 드러난다. 이량은 『홍문록』 선록을 자신하다가 탈락하고 나서 자신에게 권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언급하며 다녔다고 한다.<sup>102</sup> 그런데 1559년(명종 14) 1월, 이량은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신은 이량의 『홍문록』 등재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부기(附記)했다. 이량의 자부(姝夫) 심강이 아버지인 심연원에게 이량의 『홍문록』 등재를 요청하자, 이량이 청반(淸班)에 들면 당류(黨類)를 구축해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면서 심연원이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sup>103</sup> 또 이와 상반되게 『홍문록』 작성 시 장관(長官)들은 머리를 숙인 채 손을 움츠리고 하관(下官)들은 제 뜻대로 친분이 두터운 자를 추천했다면서 그 불공정함을 지적한 사론(史論) 또한 확인된다.<sup>104</sup> 이는 하관들이 사정을 썼음을 비판한 것이었다.<sup>105</sup> 이렇게 봤을 때 『홍문록』 등재는 추천과 권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관·하관을 가리지 않고 사정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와 달리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후손을 적극 등용해야 한다면서 성삼문의 외손인 박호의 『홍문록』 등재가 언급되기도 했다.<sup>106</sup> 다만, 이러한 예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적된 『홍문록』은 왕의 최종 검토를 거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1537년(중종 32) 중종은 김안로를 실각시키면서 김안로와 연결된 인사들이 『홍문록』에 등재되지 못하도록 전교했다. 그리고 중종은 직접 『홍문록』을 살펴보고, 이약해를 기묘의 부류(己卯之類)로 지목하며 이런 사람을 홍문관에 둘 수 없다고 했다.<sup>107</sup> 다음 날 대신들은 “그 사람의 현부만 봐야

102 『明宗實錄』 10년(1555) 윤11월 5일.

103 『明宗實錄』 14년(1559) 1월 9일.

104 『明宗實錄』 1년(1546) 4월 28일.

105 홍문관 하관의 사정 개입은 앞서 확인한 성종 대 안호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06 『中宗實錄』 12년(1517) 11월 25일; 『中宗實錄』 12년(1517) 11월 27일. 한편으로는 박호의 『홍문록』 등재를 미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中宗實錄』 13년(1518) 5월 5일.

하며, 기묘년 사람들은 돌아와 현직(顯職)에 있다.”면서 이약해의 『홍문록』 등재를 옹호했다.<sup>108</sup> 1559년(명종 14)에는 명종이 직접 『홍문록』에 뽑힌 9명의 자질에 의문을 표했고, 사신(史臣) 또한 선발된 인물들이 “명기(名器)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sup>109</sup> 이 사례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종·명종이 직접 『홍문록』 등재자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았을 때, 비록 그 선발은 홍문관, 이조, 의정부 등을 거쳐 완성되었지만, 상징적으로는 왕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IV. 맺음말

---

본고는 조선전기 초택을 통한 인재 선발과 이를 활용한 인사 운용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홍문록』 운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무재록』·『사유록』·『승문록』 사례 검토를 통해 조선전기 초택 인사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무재록』은 젊은 관료를 발탁해 미래의 장수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세조 대 식년마다 정기적으로 작성했다. 동년 배도 추천인에 포함하고 피추천 대상에 무직자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사람을 뽑고자 했고, 구전군관의 추천 대상을 『무재록』으로 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장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사유록』은 성균관에 구입하면서 후학 양성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놓은

---

107 『中宗實錄』 32년(1537) 10월 27일; 『中宗實錄』 32년(1537) 10월 28일.

108 『中宗實錄』 32년(1537) 10월 29일.

109 『明宗實錄』 14년(1559) 7월 13일. 1541년(중종 36)에는 19명이 뽑혀 그 엄밀성을 지적받았다. 『中宗實錄』 36년(1541) 3월 20일. 이렇게 보았을 때, 『홍문록』 선발 인원은 점차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세종~중종 대에 간헐적으로 작성되었다. 『무재록』과 달리 『사유록』은 이·예조 및 당상들의 추천·검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밖에 『승문록』도 운용되었는데, 이 또한 미래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을 선별해놓은 것이었다. 이처럼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면 미리 선별해놓는 인사 운용은 15세기부터 운영되던 것이었고, 『홍문록』은 이러한 인사 운용의 연장선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검토한 시기까지 『홍문록』은 홍문관원의 1차 추천 명단을 이조로 보내면 이조에서 명단을 검토·마감해 의정부로 보내고, 의정부는 이조로부터 받은 명단을 검토·마감하여 명단을 확정했다. 이조와 의정부는 명단을 검토하면서 수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해진 명단은 최종적으로 왕이 검토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했다. 문제는 이러한 『홍문록』 성적의 각 단계에서도 ‘추천’이 결정적 요소였다는 점이다. 특히 점차로 현직 홍문관원의 추천 명단이 중요해지고, 이조와 의정부 추천 규정은 점차 사문화되었다. 따라서 『홍문록』을 둘러싼 사정 개입은 대신들에서 낭관들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였다.

『홍문록』 등재자는 미래의 홍문관원으로서뿐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선정되었다는 권위 또한 중첩되어 그 위상이 올라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중종 대 초택에서 『홍문록』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는 것은 사실상 사가독서 선발뿐이었다.<sup>110</sup> 『홍문록』 등재는 홍문관 보장이라는 실질적 보장뿐 아니라, 당대의 청반이라는 권위까지 얻을 수 있었다.

초택을 시행한 아문과 역할은 주로 특정한 능력 혹은 장기적인 대비를 요하는 직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홍문록』을 비롯한 초택의 대부분은 추천을 통한 초안 작성과 대신들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었다. 물론 정량 평가도 포함되었을 것이지만, 추천이 우선되어야 했기에 정성적 요소

110 『中宗實錄』 25년(1530) 5월 22일.

가 결정적 요소였다고 판단된다. 정성 평가에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인사의 공적 운영 저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초택 인선은 점차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왕의 학술 자문을 담당했던 홍문관의 기관 특성상 『홍문록』만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고는 『홍문록』을 둘러싼 사건·사례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홍문관 인사 전체를 조망하지 못했다. 특히 중종~명종 재위기는 정치적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는데, 주로 젊은 문신들이 피해를 받으면서 문신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문신 임용직의 공식화 현상이 빚어졌다. 홍문관에서는 남행직에 궐원이 늘어났는데, 차례대로 천전하여 승진하는 홍문관의 승진 규정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홍문관의 6품 이상들이 대간이나 타 관직으로 이동하면 그 아래에서 승진해야 하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문신들이 파직·파출되어 홍문관 남행에 임명할 사람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홍문관 남행 임명을 위한 『홍문록』 추가 작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 『홍문록』 작성은 홍문관 인사 범주 속에서 살펴보아야 그 운용 양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經國大典』.

『朝鮮王朝實錄』(太祖~明宗).

金宗直, 『佔畢齋集』.

李宗城, 『梧川集』.

### 2. 단행본

오중록,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고양: 국학자료원, 2014.

이중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 성남: 신구문화사, 2009.

최이돈, 『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研究』. 서울: 일조각, 1992.

최승희, 『朝鮮初期 言論史研究』. 파주: 지식산업사, 2004.

### 3. 논문

남지대, 「朝鮮後期の '黨爭' 과 清要職」.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재호, 「弘文館 機能의 變遷」. 『釜山大文理大論文集』 제16권, 1977, 341~359쪽.

최승희, 「홍문록고」. 『大丘史學』 제15·16권 제1호, 1978, 269~288쪽.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전기 엄선을 통한 인재 선발과 이를 활용한 인사 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홍문록』 운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홍문록』 이전의 사례인, 『무재록』·『사유록』·『승문록』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엄선을 통한 인재 선발은 주로 특정한 능력 혹은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직무들이었다.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을 미리 선별하는 것은 15세기부터 운영되었다. 『홍문록』은 이러한 인사 운용의 연장선에서 시행되었다.

『홍문록』은 홍문관원의 1차 추천, 이조의 검토·마감, 의정부의 검토·마감을 거쳐 선발되었다. 이조와 의정부는 명단을 검토하면서 선발 인원을 수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해진 명단은 최종적으로 왕이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되었다. 『홍문록』 등재자는 당대의 청반이라는 권위까지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직 홍문관원의 추천이 중요해졌고, 이조·의정부 추천 규정은 점차 사문화되었다.

그런데 『홍문록』을 비롯한 엄선을 통한 인재 선발은 추천이 결정적 요소였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이는 인사의 공적 운영을 저해했다. 이러한 이유로 엄선을 통한 인재 선발은 폐지되었으며, 홍문관의 기관 특성상 『홍문록』만 운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23. 2. 20.

심사일 2023. 4. 17.

게재 확정일 2023. 5. 11.

주제어(keywords) 초택(抄擇, Carefully selection), 홍문록(弘文錄, *Hongmunrok*), 홍문관(弘文館, *Hongmun-gwan*), 추천제(a recommendation system), 검증(personnel verification)

## Abstract

### Carefully Selected Personnel Management and *Hongmunrok* (弘文錄) in the Early Joseon Period

Shin, Donghoon

This study examines the recruitment of talent through careful selectio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management of personnel. It also examines the operational aspects of *Hongmunrok* (弘文錄). First, the previous case of *Hongmunrok*, *Mujaelog* (武才錄)·*Sayulog* (師儒錄)·*Seungmunlog* (承文錄) operation case was examined. Talent recruitment through careful selection mainly occurred for jobs that required specific skills or long-term training. The practice of carefully selecting and preparing a person for a specific task started the 15th century. *Hongmunrok* was implemented as an extension of this form of personnel management.

*Hongmunrok* recruits were first selected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Hongmun-gwan* (弘文館) staff, then reviewed and selected by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吏曹), and then reviewed and selected by the State Council of Joseon (議政府).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and the State Council of Joseon were able to revise the number of people selected while reviewing the list. The list determined in this way was finally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king.

*Hongmunrok* holders were even able to gain authority as members of a young elite of the time. As time passed, the recommendations of current *Hongmun-gwan* employees became more important, and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and the State Council of Joseon's recommendations gradually became less important. However, since recommendation was the decisive factor in the selection of talent, including *Hongmunrok*, there was a lot of room for subjectivity. This hindered the public operation of personnel. For this reason, the recruitment of talent through careful selection was abolished, and it is thought that only *Hongmunrok* was operated due to the nature of *Hongmun-gwan* as an institution.

